

9. 임대주택법 시행령 중 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교통부공고 제1998-270호 1998. 7. 4

주 요 골 자

- 가. 재정의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50년 범위 내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장기간 투자되어 있는 자금의 조기회수를 통하여 임대주택 건설자금으로 재투자 할 수 있도록 함.
- 나.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영구임대목적으로 건설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내에도 매각이 가능토록 하여 기업체 및 임대사업자의 자금부담을 완화하여 임대사업의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 다. 현행 임대주택의 임차권양도 또는 전대사유인 근무·생업 또는 질병치료에 결혼·취학 등을 추가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임대차관련 분쟁을 해소토록 함.
- 라.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토지소유권의 확보, 저당권등을 말소후 입주자를 모집토록 하여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토록 함.

개정이유

외환위기 이후 금융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사원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단축하고 임대의무기간내에도 매각이 가능하도록 하여 매각자금을 활용하도록 하고, 임대주택의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사유에 결혼·취학 등을 포함하여 임차인의 편의를 도모하며, 기타 임대주택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하자 함.

주택회보